의안번호	2219126
의 뢰 인	이정헌 의원
회 답 일	2026.7.8.
추계번호	26B27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지원 비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2028~2032년) 총 1,127억원~2,818억원(연평균 225억원~564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억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21조제3항)	시나리오1 (20% 보조)	200	212	225	238	252	1,127	225
	시나리오2 (30% 보조)	300	318	337	357	378	1,691	338
	시나리오3 (50% 보조)	500	530	562	595	630	2,818	56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지원 비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고용안정자금의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6. 본 추계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재하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산출한 재정소요이므로, 실제 자료를 적용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보전을 위하여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	• 공식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 기간 등을 준용하여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 최저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1)]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2026.3. 기준, 단위: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최저임금상승률	3.3	3.3	3.3	3.3	3.3	3.3

❑ 본 추계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시 사업주가 기입한 월평균 임금을 같은 기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산출한 재정소요이므로, 관련 통계 자료가 구체화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2]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동일·유사 직종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평가·비교하여 7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결정하고 있음

---

2)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표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인가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취업처		장애유형				
		직업재활시설	이외 사업장	지체	발달	정신	시·청각	기타
2021년	9,475	9,066	409	270	8,340	518	106	241
2022년	10,043	9,655	388	242	8,894	540	119	248
2023년	9,816	9,437	379	211	8,734	539	99	233
2024년	10,277	9,926	351	200	9,121	590	118	248
2025년	10,145	9,855	290	193	9,058	545	108	241

주: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업능력평가 결과 인가기준 점수(기준 근로자의 70%)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 기준으로 작성
2. 기타란,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 호흡기장애 등을 말함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124호)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고용안정자금의 지급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대상자의 요건 및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고용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추정하기 곤란
- 다만, 본 추계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토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수)에 지원단가와 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근로기간을 적용하여 추가임금을 산출하되, 산정된 추가임금의 20%, 30%,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산

❑ (사업대상자 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인가를 받았으나 근로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인가 신청 자료에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수를 산출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작성한 자료로 2025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총 15,437명이며 이 중 9,302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추가재정소요는 고려하지 않음

[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수(A)	13,600	14,228	14,570	15,024	15,437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B)	8,393	8,741	8,975	9,193	9,302	2.6%
최저임금 이상 장애인 근로자(C=A−B)	5,207	5,487	5,595	5,831	6,135	—

자료: 보건복지부

○ 추계기간 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최근 5년간(2021~2025) 연평균 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

[표 4]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추정치): 2028~2032년

(단위: 명)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10,048	10,309	10,578	10,853	11,1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법정 최저시급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차감하여 산출

○ **(법정 최저시급)** 2026년 기준 최저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되, 추계기간 동안 최저시급은 NABO 최저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시 사업주가 기입한 월평균 임금(420,719원)을 같은 기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1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

[표 5] 월평균 임금 및 월평균 근로시간(추정치)

(단위: 원, 시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A)	370,461	382,633	397,710	413,329	420,719	396,970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B)	112	119	118	118	118	117
C=A/B	3,308	3,215	3,370	3,503	3,565	—

주: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개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시 사업주가 기입한 금액의 평균 임금으로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음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작성한 내용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기간(2028~2032년) 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에 2025년 기준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의 비중(35.5%)을 적용하여 산출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의 비중이 추계기간(2028~2032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계기간(2028~2032년) 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근로기간) 12개월

○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근무 형태 및 입·퇴직 등에 따라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가능성이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임금의 20%, 30%,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표 6]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8~2032년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A, 명)		10,048	10,309	10,578	10,853	11,136
지원단가	법정 최저시급(B, 원)	11,006	11,364	11,735	12,117	12,51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 (C=B×35.5%, 원)	3,912	4,040	4,171	4,307	4,448
	차액(D=B−C, 원)	7,093	7,325	7,563	7,810	8,064
	월평균 근로시간(E, 시간)	117	117	117	117	117
	지원단가(F=E×D, 원)	829,930	856,981	884,914	913,758	943,541
근로기간(G, 월)		12	12	12	12	12
추가임금 (H=A×F×G, 억원)		1,001	1,060	1,123	1,190	1,261
	시나리오1(20% 보조)	200	212	225	238	252
	시나리오2(30% 보조)	300	318	337	357	378
	시나리오3(50% 보조)	500	530	562	595	63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지원 비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고용안정자금의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6. 본 추계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재하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산출한 재정소요이므로, 실제 자료를 적용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고용안정자금의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